

청소년활동의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

추진배경

-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 강조로 청소년활동 활성화 위한 선제 조치 필요
- 청소년활동 운영 위축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인증을 통한 발전동력 확보
- 비대면활동이라는 새로운 운영사례로 안전사고 리스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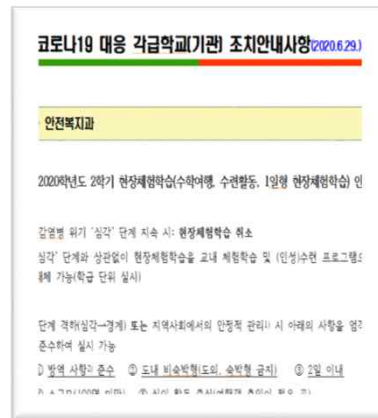
주요성과(BP)

-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활동 분야를 비대면 ·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
-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의 안전 확보 및 질적수준 향상
- '20년 운영된 인증수련활동 181건 중 48건(26%)이 비대면방식 활동으로 운영되어 인증수련활동의 운영을 향상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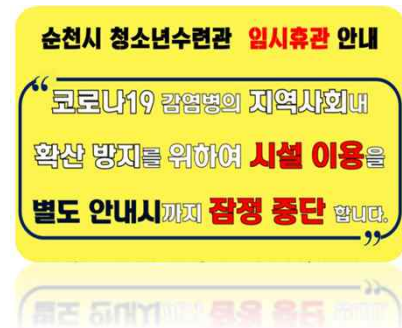
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Korea Youth Work Agency

비대면·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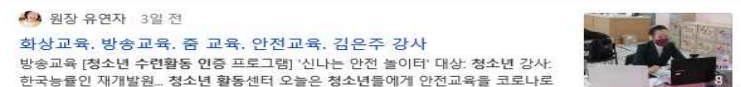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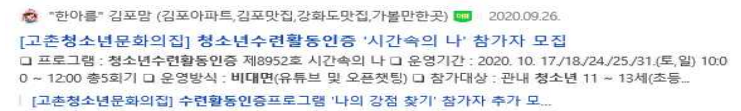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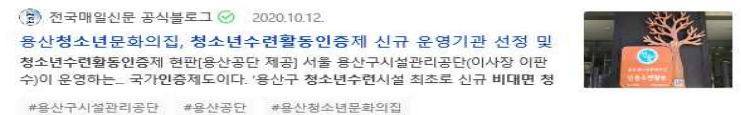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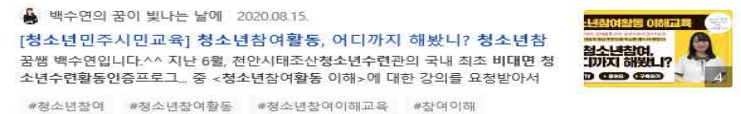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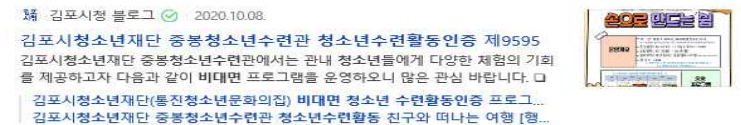
- 단체활동 및 행사 지양으로 인한
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연기 또는 금지



-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계속적 증가로
청소년수련시설 등 장기 휴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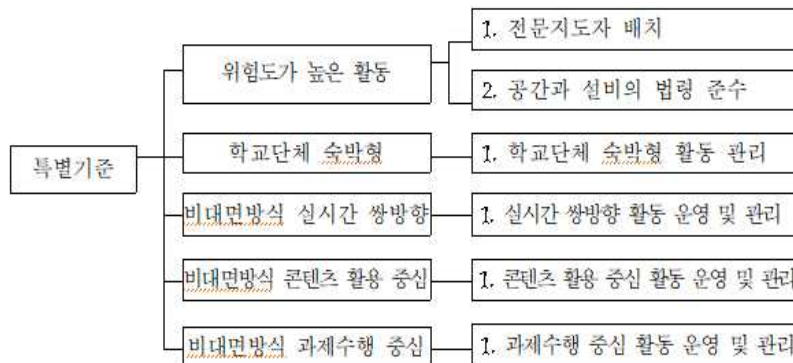


- 비대면방식의 청소년활동 인증으로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활동 추진 동력 마련, 활발한 청소년활동 운영 지속



비대면·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기준 마련

- 비대면방식의 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
- 향후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원격교육 종류와 맞추어 구분
-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안전 확인요소 개발



<비대면방식 인증기준 부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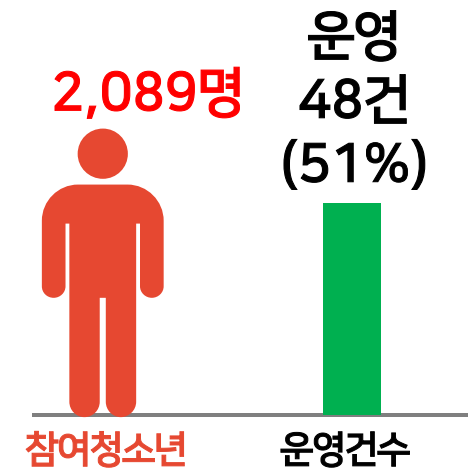
비대면방식의 활동 구분

구분	내용
실시간 쌍방향	실시간 활동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 및 지도자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활동으로 지도자가 청소년에게 즉각적 피드백 진행
콘텐츠 활용 중심	청소년은 지정된 녹화 강의 또는 사전 제작된 콘텐츠로 정보를 습득하고 지도자는 활동의 진행도 확인 및 사후 피드백 진행
과제 수행 중심	지도자는 발달 특성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제시 및 사후 피드백 진행
기타	그 밖에 다른 운영방식으로 진행(운영방식의 설명 자세히 기재)

<비대면방식의 활동 구분>

비대면방식 인증활동의 높은 운영율

- 대면방식 인증수련활동 48건 운영
- 비대면방식 인증활동은 94건으로
전체 인증활동 3,200건 가운데 2.9%에 불과하나
전체 인증수련활동 운영 181건 대비 26% 운영
- 소규모 인원 모집에도 불구하고
2,089명의 청소년이 참여



안전한 인증활동에 대한 최대 보장

비대면활동의 안전리스크 존재

- 활동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상품이 부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의 어려움 존재

비대면방식 인증활동 배상책임보험 보장

- 비대면방식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하여 신속하게 손해보험증개사와 개발회의 추진
- 비대면방식이 포함된 인증제도 특화 보험상품인 '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' 개발
- 비대면방식 인증활동은 배상책임보험에 자동가입되어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 (보장금액: 5억원 및 실손 5백만원 등)

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(|)-Occurrence Basis



10. 위험

1. Covered Operation : Youth Activity/Training (청소년 활동)

- 인증수련활동 운영 중 주관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 피해보상
- 야외 또는 실내(운영기관 보유 실내시설 포함, 수련시설(법적 의무보험을 가입)의 보험목적물은 제외
- 단, 소규모 문화의집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법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실내를 포함하여 보장

2. 운영방식 : 활동 운영방식(대면, 비대면)과 무관하게 동일 수준으로 보장

3. 청소년활동 전통법과 관련된 위험도가 높은 활동 포함

- 지도자 : 인증수련활동 지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소송 비용 및 배상금
- 대 물 : 청소년이 제3자의 물품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, 청소년의 물품(핸드폰 등) 보상
- 생산물 : 진흥원으로부터 인증 허가를 받은 수련기관들이 방문하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한 손해 보상

(단,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식당들에 한해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한도초과액 담보)

4. 자동차 :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차량(트랙터 포함)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담보 (무보험 차량도 포함)

5. 수련활동 시설소유 위험 : 대인보상한도 미적용

11. 보험료 WON 22,300,000.-flat

이 계약의 증거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(주)는 이 증권에 그 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서명합니다.

대한민국, 서울

2020.08.12

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

Yoon Cho An



대표이사서명

110-7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63